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3
----------	----

2014년 9월 24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년 9월 4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4년 9월 24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)

○ 제안이유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함.

○ 주요내용

- 가. “건설기술관리법”을 “건설기술 진흥법”으로 변경(안 제1조 등)
- 나.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변경(안 제2조제1호 등)
- 다. 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을 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

원법”으로 변경(안 제5조제2항제2호가목)

3. 검토보고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종식)

■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2014.9.4.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.9.5.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,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이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으로 전부개정(2013.5.22.)되어 금년 5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.

■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

□ 인용 상위법명 및 용어 개정 (안 제5조제2항제2호가목,다목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 가. 「 <u>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다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1조에 따른 <u>자연재해저감신기술</u>	제5조(기능) ① ----- -----. ② ----- --. 가. 「 <u>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</u> 」 ----- 다. ----- <u>방재신기술</u>

- 안 제5조제2항제2호 가목은 인용 상위법인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명이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으로 개정

(2011.10.29.)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며, 같은 항 다목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1조에 명시된 “자연재해저감신기술”의 용어가 “방재신기술”로 변경(2012.2.22.)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임.

- 이는 관련 상위법이 개정 되지 각각 상당기간이 경과 된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를 운영하는 기술심사담당관이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에 소홀했다할 것이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□ 설계반영의무 조항 개정 (안 제10조)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설계반영의무) 발주청은 <u>영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기술을</u>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,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,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(이하 "신기술개발자"라 한다)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	제10조(설계반영의무) ----- <u>영 제34조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- 이는 상위법인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이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으로 전부개정(2013.5.22.)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.

다만,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함에 있어 현행보다 강제력이 다소 후퇴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기술 선정 시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을

위한 본 조례의 취지에 따라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독려함도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□ 기타 개정사항

-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명과 용어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□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이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으로 전부 개정(2013.5.22.)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상위법인 「건설기술관리법」,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이 개정된지 상당기간 경과된 현 시점에서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,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 43조”를 “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 36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건설기술관리법」”을 “「건설기술 진흥법」”으로, “제 18조제1항”을 “제14조제1항”으로,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 관”으로, “법 제18조제3항”을 “법 제1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6호 중 “법 제18조제4항”을 “법 제14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“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자연재 해저감신기술”을 “방재신기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건설기술관 리법 시행령」 제64조”를 “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75조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기술을”을

“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”으로 한다.

제13조 단서 중 “다만”을 “다만,”으로, “법 제16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건설기술 관리법</u>」 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건설공사(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)에 신기술을 활용·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신기술"이란 「<u>건설기술관리법</u>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8조 제1항에 따라 <u>국토해양부장관</u>이 지정·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 <u>법 제18조제3항</u>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4조(설치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소속으로 신기술의 활용·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<u>국토해양부</u> 훈령 「신기술 현장적용기준」에 따른 <u>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건설기술 진흥법</u>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1. ----- 「<u>건설기술 진흥법</u>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4조 제1항 ----- <u>국토교통부장관</u>----- ----- <u>법 제14조제2항</u>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설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토교통부</u> ----- ----- -----.</p>

제5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~5. (생략)

6.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 시공의 실시 여부

7. (생략)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(생략)

2.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

가.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

나. (생략)

다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1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신기술

라. (생략)

3. (생략)

③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4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0조(설계반영의무) 발주청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기술을 건설공사 설

제5조(기능) ① -----
-----.

1.~5. (현행과 같음)

6. 법 제14조제4항-----

7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-----

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

----- 방재신기술

라. 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③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5조 -----

제10조(설계반영의무) ----- 영
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
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

계에 반영하고,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,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(이하 "신기술개발자"라 한다)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)
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.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.

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-----

-----.

제13조(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)

----- . 다만, -----
----- 법 제7조제1항 -----
-----.